

2025년도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」
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

2025년도 고용노동부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」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모집하오니,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신청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024. 12. 19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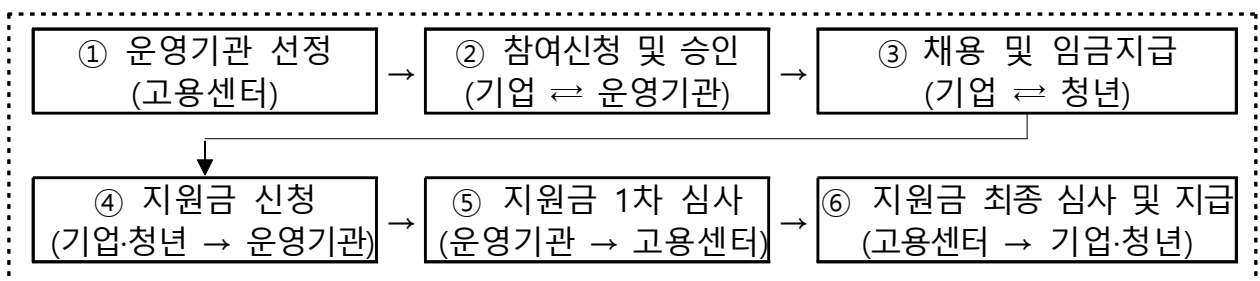
고용노동부장관

**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
모집 공고**

1 사업개요

❖ 아래 사업개요는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업내용은 「고용24」에 추후 게시될 사업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(개요)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함
 - (유형 I)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
 - (유형 II)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,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
- (지원대상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
 - (유형 I) 취업애로청년*을 채용한 5인 이상** 우선지원대상기업
 - * (취업애로청년) 만 15~34세의 ▲4개월 이상 실업, ▲고졸 이하 청년 등
 - **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청년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
 - (유형 II)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
- (지원내용)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
 - (유형 I)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
 - (유형 II)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, 근로자에게는 18개월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 (18개월·24개월차 각 240만원씩 지원)
- (지원요건)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, 주 30시간 이상 근로 등
- (추진체계) 고용센터, 민간위탁 운영기관



2 사업위탁 관련 주요내용

- 위탁규모 : 총 10만명 (유형 I 5만5천명 · 유형 II 4만5천명)
 - * 단, 전체 위탁규모의 90%에 대해 우선 배정한 후, 운영기관의 사업 추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잔여 10% 추가 배정
- 위탁기간 :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배정받은 인원에 대하여 채용일로부터 24개월 기간동안 지원금 지급 및 정산 완료시까지
- 위탁내용
 -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
 -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 · 모집 및 상담 지원
 -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, 적격 여부 확인 · 승인
 -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 · 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
 -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 · 승인
 -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 관련 신청 접수 및 지급요건 사전 심사
 - 참여기업·청년에 대한 지도 · 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
 - 이 지침,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
- 위탁 사업지역 : 위탁약정을 체결하는 고용센터 관할지역
- 위탁운영비: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유형별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지급

※ 위탁운영비 지급기준 등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되 추후 확정 예정임

- (지급기준)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함

[유형 I] 지급조건*을 만족한 청년 1인당 20만원

* (기업지원금 조건)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1회차(6개월분) 지원금 지급시 20만원

[유형II] 지급조건*을 만족한 청년 1인당 30만원

* (기업지원금 조건)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1회차(6개월분) 지원금 지급시 20만원

* (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조건)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18개월 근속하여 1차 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시 10만원

- (지급방식) '25년 상반기에 1회, '26년 상반기에 1회 위탁사업비의 50%씩 분할 지급하되, 사업 종료 후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

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

○ 신청자격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
① 「직업안정법」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·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

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(대학), 제2호(산업대학), 제4호(전문대학)에 따른 학교 중 정부재정지원*이 가능한 대학**

* '25년도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선정 이후 '25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에서 제외된 경우,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선정 취소 혹은 위탁운영약정 해지함

**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

** 「직업안정법」 제18조에 따라 대학은 해당 대학 재학생·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음

③ 다른 기관과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도 가능

* 다만, 주된 사업자는 사업 신청 접수, 지원금 지급, 참여기업 지도·점검은 직접 수행하여야함

○ 신청제한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
① '24.12.31.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거나,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

② '24.12.31.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

- **신청규모** : 운영기관별 최소 500명* 이상 위탁신청
 - * 신청 운영기관은 유형 I·II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, 총합 인원으로 신청함 (단, 총 위탁규모의 유형별 비율에 따라 사업을 계획할 수 있음)
 - *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역여건(사업장 수, 청년인구 수) 및 '24년 사업 참여실적 등을 고려할 경우 500명 미만으로 위탁 가능
- **기타사항**
 - '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결과 A등급 기관은 우선 선정
 - '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결과 B등급 기관은 심사 시 5점 이내 범위에 가점
 - '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결과 D등급 기관은 선정 제한
- **제출서류** : ①신청서(구비서류 포함) 10부 또는 ②신청서 원본 1부 및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(pdf형식) 후 저장한 USB 1개
 - * 8개 대표(지)청은 제출서류 형식을 위 ① 또는 ② 중에서 선택하여, 지청에도 같은 형식의 서류가 접수되도록 안내
 -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 「뉴스·소식-공지사항-공고」에서 다운받아 작성

4 신청기간 및 방법

- **신청기간** : '24. 12. 20.(금) 09:00 ~ '25. 1. 3.(금) 18:00
- **신청방법** : 신청기관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
 - * 우편 접수는 마감일 현재 도착분에 한함
 - **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고용센터가 아닌 다른 고용센터와 위탁약정을 체결할 수도 있음

5 선정절차

- (심사) 고용노동부 8개 지방청(대표지청 포함)별로 「선정심사위원회」를 구성하여,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
- (결과 통보) 신청서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통보
*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 「뉴스.소식-공지사항」 게재 병행
- (위탁약정 체결) 고용센터-운영기관 간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 수행

6 문의처

- 관할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 * 붙임 고용센터 문의처 참고

[서식 1]

(단 독) 『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』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
 (컨소시엄)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관 현황 (주사업자) | 기관명 | 법인등기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 | |
| | 소재지 | | |
| | 대표자 | 담당부서 | |
| | 전화번호 (F A X) | 관리책임자 (E - m a i l) | |
| | 직업소개업 신고(등록) 여부 | <input type="checkbox"/> 무료직업소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유료직업소개사업 | |
| | 기관 유형 |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영리 <input type="checkbox"/> 영리 | |
| 기관 현황 (보조사업 자) | 기관명 | 법인등기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 | |
| | 소재지 | | |
| | 대표자 | 담당부서 | |
| | * 컨소시엄의 경우만 작성 | 전화번호 (F A X) | 관리책임자 (E - m a i l) |
| | 컨소시엄 사업내용 | 보조사업비율 (위탁비 기준) | |

2025년 『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』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(지)청장 귀하

| | |
|---------------|---|
| 첨부서류 (10부) | 1. 신청기관 일반현황(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포함) 2. 사업계획서 3.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등) |
|---------------|---|

일 반 현 황

1. 현황 및 연혁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신 청 기 관 명 | | 대 표 자 | |
| 소 재 지 | | | |
| 주 요 사 업 내 용 | | | |
| 연 락 처 | 전화번호 : | 팩스번호 : | |
| 설 립 연 도 | 년 | 월 | |
|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| 년 | 월 | ~ 년 월 |
| 주 요 연 혁(요약) | | | |
| | | | |

2. 자본금 및 매출액(최근 3년간)

| 구 분 | 2023년 | 2022년 | 2021년 | 합계 | 평균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|----|
| 총 자 산 | | | | | |
| 자 기 자 본 | | | | | |
| 유 동 부 채 | | | | | |
| 고 정 부 채 | | | | | |
| 유 동 자 산 | | | | | |
| 당 기 순 이 익 | | | | | |
| 분야별 매출액 | | | | | |
| - ○ ○ 분 야 | | | | | |
| - ○ ○ 분 야 | | | | | |
| 자 기 자 본 비 율 | | | | | |
| 자기자본순이익률 | | | | | |
| 유 동 비 율 | | | | | |

※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
 ※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

3. 조직 및 인원

| | | | | | | |
|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|--|
| 계 | 기획부 | 연구부 | ... | ...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
※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(조직도 첨부 가능)

4.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

| 부서명 | 담당분야 | 성명 | 연령 | 최종학력 | 근무경력 | 직위 | 담당업무 | 자격증 | 정규직* 여부 |
|-----|-----------|----|----|------|------|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|
| | 총괄 책임자 | | | | | | | | |
| | 등록 | | | | | | | | |
| | 지원금 지급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
※ 자격증 사본 첨부

※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

*정규직: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여부

사업계획서

1. 사업 목표

- ※ '25년도 목표인원(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자) 등 계량화된 목표 제시
 - 유형 I · II 를 개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, 총합 인원으로 신청함
(단, 총 위탁규모의 유형별 비율*에 따라 사업을 계획할 수 있음)
 - *위탁규모 : 총 10만명 (유형 I 5만5천명 · 유형 II 4만5천)

2. 사업 내용

- ※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·홍보, 참여자(기업,청년) 발굴·모집, 상담·지원, 사업 신청 접수·적격 여부 심사, 지원금 신청·지급 등

3. 사업 계획 *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,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

가. 세부 추진계획(분야별 계획마련)

- ※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, 청년 및 기업 발굴·모집·확보 방안, 적정 상담 등 채용지원, 지역 네트워킹 활용 방안, 지원금 적기 지급 방안,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

나. 위탁사업비 운용계획

| 구분 \ 비 목 | 산출내역 | 금 액 | 구성비 |
|--|------|-----|-----|
| ○ 인건비 소계 | | | |
| 컨설턴트 보조원 | | | |
| ○ 경비 소계 | | | |
| 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섭외활동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· · · | | | |
| ○ 계 | | | |

※ <총사업예산> (유형 I) 목표 채용인원 × 20만원, (유형 II) 목표 채용인원 × 30만원

다. 보유 시설 및 인력 활용계획

※ 보유 시설 전체 면적 및 상담실, 프로그램 운영실, 교육장 등의 면적{유형 자산(PC, 사무기기 등) 및 무형자산(시행체계, 상담기법, 상담도구 등) 보유 현황}

4-1. 유사사업 추진 실적(최근 3년간)

| 구분 | 사업 수행 실적 |
|-------|----------|
| 2024년 | ■ ■ |
| 2023년 | ■ ■ |
| 2022년 | ■ ■ |

※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지원프로그램, 타 기관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

※ (정량실적) 참여자 모집 실적, 서비스 수행 실적, 관리 사업장 수,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
(정성실적)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

4-2. 해당 분야의 전문성

| 구분 | 사업 수행 전문성 |
|----|-----------|
| | ■ ■ |
| | ■ ■ |

※ 해당 분야(산업 등)의 구인처 보유·관리 현황 등, 사업운영 전문성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

5. 월별 사업수행계획

| 월 또는 분기 | 목표인원 | 주요 사업내용 | 비고 |
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사업계획서는 본 서식(A4용지, 한글파일)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되, 분량이 많을 경우 5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첨부할 것

『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』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

○ ○ 기 관 심 사 표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|------|--|
| 기 관 명 | | | |
| 총 직원수/ 전담직원수 | | 신청인원 | |
| 특이사항 | | | |

| 주요항목 | 세 부 항 목 | 평가 점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|
| 사업수행 능력 (30점) |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(10점) | |
| | 취업알선의 전문성 및 전문인력 보유정도 (10점) | |
| | 자체 알선망 및 시설 등의 적정성 (10점) | |
|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(50점) | 사업 홍보 및 참여자(기업·청년) 발굴·모집 계획의 적정성 (20점) | |
| | 참여자 지원· 관리 방안 (30점) | |
| 인적자원 운용 계획 (15점) | 인적자원 운용 방안 (15점) | |
| 유관기관과의 협력 (5점) | 지역 네트워킹 활용 (5점) | |
| ‘24년 운영기관 평가 결과 (가점 5점) | ‘24년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평가 B등급 기관은 5점 이내 가점 | |
| 총 계 | | |

평가자: 위원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『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』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

| 기 준 | 세 부 기 준 | 심 사 항 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사업수행 능력 (30점) |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(10점) | ·최근 3년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 및 실적(참여자 모집 실적, 취업률 등) |
| | 취업알선의 전문성 및 전문인력 보유정도 (10점) | · 직업상담사 또는 상담경력자, 기타 전문인력 보유정도 등 청년층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알선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(대상자 발굴·모집의 전문성, 상담 및 관철은 일자리 선별·관리능력 보유 여부 등) *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 제외 |
| | 자체 알선망 및 시설 등의 적정성 (10점) | ·취업알선전산망 보유여부, 관리프로그램, 상담·알선에 적합한 상담시설 보유실태 등 |
|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(50점) |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발굴·모집 계획의 적정성 (20점) | ·사업 홍보 수단(자체인터넷, 구인·구직 DB보유여부, 홍보 매체 등) 활용, IT 분야 맞춤형 홍보 전략, 홍보 전략의 실현가능성, 예산 활용 계획의 적정성 등 |
| | 참여자 지원·관리 방안 (30점) | ·주기별 지원금 신청 안내 및 적기 지급 처리, IT직무 재직 여부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, 현장지도점검, 청년의 디지털 역량 향상 촉진 등 참여자 관리 방안 |
| 인적자원 운용계획 (15점) | 인적자원 운용 방안 (15점) | ·업무담당자 1인당 참여자의 적정성,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|
| 유관기관 과의 협력(5점) | 지역 네트워킹 활용 (5점) | ·지역 인력수급기관(특성화고, 대학 등)과의 협업, 지역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여부 등 |
| 비 고 | ‘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A등급 기관 : 우선선정 ‘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B등급 기관 : 5점 이내 가점 부여 ‘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D등급 기관 : 선정 제한 | |

|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붙임 |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(문의처)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
| 지방청 | 고용센터 | 전화번호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-|---|----|
| 서울고용노동청 | 서울고용센터 | 02-2004-7394,7370 | |
| | 서초고용센터 | 02-580-4972, 4989, 4940 | |
| 서울강남지청 | 서울강남고용센터 | 02-3468-4709 4714, 4723, 4708, 4703 | |
| 서울동부지청 | 서울동부고용센터 | 02-2142-8434 8486, 8544, 8575,8932 | |
| 서울서부지청 | 서울서부고용센터 | 02-2077-3496, 6025, 6011 | |
| 서울남부지청 | 서울남부고용센터 | 02-2639-2156, 2260, 2402 | |
| 서울북부지청 | 서울북부고용센터 | 02-2171-1861, 1844 | |
| 서울관악지청 | 서울관악고용센터 | 02-3282-9371, 9380, 9385, 9393,9249 | |
| 중부고용노동청 | 인천고용센터 | 032-460-4641, 4691 | |
| 인천북부지청 | 인천북부고용센터 | 032-540-5731 | |
| | 인천서부고용센터 | 032-540-2050 | |
| 부천시청 | 부천고용센터 | 032-310-8843, 8852 | |
| | 김포고용센터 | 031-999-0939, 0941 | |
| 의정부지청 | 의정부고용센터 | 031-828-0893, 0975 | |
| 고양지청 | 고양고용센터 | 031-920-3928, 3960 | |
| 경기지청 | 수원고용센터 | 031-231-7835, 7855, 7858, 7938 | |
| 성남지청 | 성남고용센터 | 031-739-4902, 4907, 4932, 4942, 4946 | |
| 안양지청 | 안양고용센터 | 031-463-3827 3801, 3805, 0768 | |
| 안산지청 | 안산고용센터 | 031-412-6942, 6645, 6647 | |
| 평택지청 | 평택고용센터 | 031-646-1264~5, 1268, 1242 | |
| 강원지청 | 춘천고용센터 | 033-250-1924 | |
| 강릉지청 | 강릉고용센터 | 033-610-1990 | |
| 원주지청 | 원주고용센터 | 033-769-0960, 0967 | |
| 태백지청 | 태백고용센터 | 033-550-8645 | |
| 영월지청 | 영월고용센터 | 033-371-6254 | |

| 지방청 | 고용센터 | 전화번호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-|---|----|
| 부산청 | 부산고용센터 | 051-860-2072, 2101, 2100 | |
| 부산동부지청 | 부산동부고용센터 | 051-760-7247, 7286 | |
| 부산북부지청 | 부산북부고용센터 | 051-330-9986 9952, 9970, 9945 | |
| 창원지청 | 창원고용센터 | 055-239-0960 | |
| 울산지청 | 울산고용센터 | 052-228-3913, 3918, 1925 | |
| 양산지청 | 김해고용센터 | 055-330-6435, 6436 | |
| | 양산고용센터 | 055-379-2431 | |
| 진주지청 | 진주고용센터 | 055-760-6753~5 | |
| 통영지청 | 통영고용센터 | 055-650-1811~3 | |
| 대구청 | 대구고용센터 | 053-667-6032 6034, 6037, 6786 | |
| 대구서부지청 | 대구서부고용센터 | 053-605-6450, 6460, 6464, 6466 | |
| 포항지청 | 포항고용센터 | 054-280-3050, 3052 | |
| 구미지청 | 구미고용센터 | 054-440-3361, 3364 | |
| 영주지청 | 영주고용센터 | 054-639-1142, 1139 | |
| 안동지청 | 안동고용센터 | 054-851-8062 | |
| 광주청 | 광주고용센터 | 062-609-8648~50 | |
| 전주지청 | 전주고용센터 | 063-270-9202, 9215~9217 | |
| 익산지청 | 익산고용센터 | 063-840-6507 | |
| 군산지청 | 군산고용센터 | 063-450-0634 | |
| 목포지청 | 목포고용센터 | 061-280-0541~42, 0552 | |
| 여수지청 | 순천고용센터 | 061-720-9150, 9161 | |
| 대전청 | 대전고용센터 | 042-480-6012~16, 6018~6019, 6029, 6447 | |
| | 세종고용센터 | 044-861-8992~3 | |
| 청주지청 | 청주고용센터 | 043-229-0715, 0717, 0719 | |
| 천안지청 | 천안고용센터 | 041-620-7443~4, 7446, 7448, 7497 | |
| 충주지청 | 충주고용센터 | 043-850-4035 | |
| | 제천고용센터 | 043-640-9322 | |
| 보령지청 | 보령고용센터 | 041-930-6259 | |
| 서산지청 | 서산고용센터 | 041-661-5664 | |